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식약처

〈주한외국대사관 대상〉

2020년 수입식품 주요 정책안내 및 협조요청

2020. 6.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목 차

1. 수입식품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 1
(수입식품정책과)

2. 축산물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안내 ····· 4
(현지실사과)

3. 해외제조업체 등록 확인 요청 ····· 12
(현지실사과)

4. 수입통관 단계 검사개정 사항 및 수출위생증명서 등 제출 안내 ····· 17
(수입검사관리과)

5.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 20
(수입유통안전과)

◎ 한국정부는 주한 외국 대사관 식품담당자(농무관, 상무관 등)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를 연2회 운영하고 있으나,

◎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식품 특별법 개정사항 및 주요 업무를 비대면 방식의 자료로 안내하고자 함

✎ 동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심포지엄발표자료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안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부조리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
▶ 공 익 신 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부패 · 공익신고 상담" 코너

1 수입식품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2020년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 추진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입식품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 **「수입식품특별법」 개정·공포(2020.4.7.), 시행일: 2021.7.1**

< 수입식품의 HACCP 규정 신설>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할 수 있음**

- 다만, 수출국 정부와 별도로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음

②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②에 따른 변경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④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HACCP인증을 받은 경우 수입가능**

⇒ **시행일: '21.10.1 * (품목) 김치에 한해 운영예정으로 현재 입안 준비중**

⑤ 필요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

⑥ 식약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인증 및 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⑦ 인증 및 변경 인증의 요건·절차, ③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⑤에 따른 조사·평가 방법·절차의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

「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20.3.31.), 시행일: 2020.3.31.**

-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을 한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배합비율이 바뀐 경우에만 변경등록 하도록 기준 개선

  *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배합비율 변경 시 예외 없이 변경등록
    (개선)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된 원료·성분의 배합비율 변경 시에만 변경 등록

- 해외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경감* 및 특별관리영업자 미지정 등 처분 경감

  * (현행) 1차: 영업정지 2월 → 2차: 영업정지 4월 → 3차: 영업등록 취소
    (개선) 1차: 영업정지 10일 → 2차: 영업정지 20일 → 3차: 영업정지 1월

- 수입식품과 장난감 등의 구분 포장 의무화*, 부적합제품의 반송·폐기 기한(1년 이내) 명확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국내 제조·가공 식품은 장난감 등 구분 포장을 명시하고 있어 수입식품도 동일하게 규정

  ** (현행) 식약처 고시로 규정 → (개선) 시행규칙에 명시적 규정 마련

■ **「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20.6.3.), 시행일: 2020.6.4**

- 수입중단 (또는 해제) 해외제조업소의 정보공개 규정 신설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및 기간을 하위법령 반영

  * (범위) 명칭, 소재지, 제조국·생산국, 수입중단조치일자, 해제일자, 중단·해제 사유

  * (기간) 3개월이상 공개

  *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수입식품정보마루) 게재

「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 주류의 동일사·동일제품 요건 완화

  - 동일사 동일제품 인정범위 확대 : (현행)포도주 (개선) 주류

◦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재료명이 같은 것을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식품

◦ 포도주의 경우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제품으로 보아 동일사·동일식품 인정

-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통관시 정밀검사를 2년간 받도록 기간 명시

* (유해물질)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3에 정하고 있음(식약처 고시, 제2020-25호, '20.4.22.)

부서	담당자	이메일
수입식품정책과	권혁승	onlypass14@korea.kr
	노지영	njy94@korea.kr

2 축산물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안내

○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축산물 수입신고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수출위생증명서 서식이 협의되지 않은 국가(60개국)에 대해 붙임 2의 표준서식(양식)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협의대상 국가에 협조 요청 서한을 6월에 송부하였으며, 우리측에 조속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참고 사항

- **대상국가 : 60개국**

  * (붙임 1) 품목별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대상국 참고

- **서식주요 내용**

  - 축산물은 건강한 동물로부터 생산되며, 수출정부 위생검사 결과 적합
  - 공중위생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잔류물질 등은 식품공전에 적합
  - 해외작업장 정보(등록번호, 명칭, 주소),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
  - 열처리 방법 명시 (품목별 열처리 조건 등)

  * (근거)「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 제5조

부서	담당자	이메일
현지실사과	강성필	kangsp@korea.kr
	안정하	anjh@korea.kr

붙임 1 **품목별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대상국 (60개국)**

구분		국 가
증명서 없음	멸균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	인도, 일본 **(2개국)**
	멸균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싱가포르, 우루과이, 폴란드, 필리핀 **(4개국)**
	알가공품, 유가공품	멕시코, 우크라이나 **(2개국)**
	멸균식육가공품	몽골, 베트남,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태국, 파라과이 **(7개국)**
	알가공품	페루 **(1개국)**
	유가공품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아랍에미리트, 아루바, 아일랜드, 에쿠아도르, 이스라엘, 중국,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파키스탄, 포르투갈, 홍콩 **(23개국)**
(증명서 없음) 유가공품 (온도협의) 멸균식육·알가공품		미국, 캐나다 **(2개국)**
(증명서 없음) 알가공품 (온도협의) 멸균식육·유가공품		프랑스 **(1개국)**
(증명서없음) 유가공품 (온도협의) 멸균식육가공품		네덜란드, 벨기에,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5개국)**
온도협의	멸균식육·유가공품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3개국)**
	알·유가공품	말레이시아 **(1개국)**
	멸균식육가공품	칠레, 핀란드, 헝가리 **(3개국)**
	유가공품	그리스, 대만, 스위스, 이탈리아, 체코, 터키 **(6개국)**

붙임 2 **수출위생증명서 표준서식**

<품목 : 유가공품>

○○○(수출국 정부) 유가공품 수출 위생증명서

1. 제품증명

1-1. 증명서 일반사항

- 증명서 번호 :
- 수출자 (이름, 주소) :
- 수입자 (이름, 주소) :

선적지 (항구 또는 공항) 도착지 (항구 또는 공항) 선박 또는 항공편

1-2. 제품 정보

- 원산지 (생산국) :
- 제품명 :
- 포장형태 :
- 수량 및 중량 :
- 운송/저장상태 : □ 실온 □ 냉장 □ 냉동
- 가공장 정보 :

등록번호	가공장명	주소
①		
②		
③		
④		

- 생산 또는 가공일자 :
- 유통기한 :
- 컨테이너 번호 :
- 열처리 방법 : 해당 온도에 체크(√)

1. LTLT : 63~65℃ 30분간(1,800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
2. LTLT : 65~68℃ 30분간(1,800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유크림류에 한함) □
3. LTLT : 68.5℃ 30분 이상(1,800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에 한함) □
4. HTST : 72~75℃ 15초~20초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 □
5. HTST : 74~76℃ 15초~20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유크림류에 한함) □
6. UHT : 130~150℃ 0.5초~5초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 □
7. 기타 : 2℃ 이상 60일 이상 숙성하는 치즈 또는 ___℃ ____초(분) □
8. (구제역 비청정국) HTST (___℃ ____초) 또는 UHT (___℃ ____초) 사용 □, 원유의 pH가 7.0 이상 이면 HTST 2회 처리 □

2. 위생증명

본인 (하단 서명 수의검사관)은 아래 사항을 증명한다.

1. 수출축산물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제조·가공·포장·운송·취급·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2. 수출축산물은 건강한 동물로부터 생산되며, 수출 정부 위생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물질(항생제·농약·호르몬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장출혈성대장균 등), 식품의 조사처리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을 포장한 용기 또는 포장지는 한국의 위생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멸균제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어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은 제품명, 제조사, 제조일(또는 유통기한)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직위 _____

검사필증인
(선택사항)

증명 담당자

정부검사관 성명 _____

서명일과 서명 _____

관할당국 또는 증명기관

3. 제품 상세 내역

연번	가공장			제품명	생산일 (가공일)	유통기한	포장수량	중량
	등록번호	가공장명	주소					
1								
2								
3								
4								
5								
6								
7								
8								
9								
10								

<품목 : 알가공품>

○○○(수출국 정부) 알가공품 수출 위생증명서

1. 제품증명

1-1. 증명서 일반사항

▪ 증명서 번호 :
▪ 수출자 (이름, 주소) :
▪ 수입자 (이름, 주소) :
선적지 (항구 또는 공항) 도착지 (항구 또는 공항) 선박 또는 항공편

1-2. 제품 정보

▪ 원산지 (생산국) :
▪ 제품명 :
▪ 포장형태 :
▪ 수량 및 중량 :
▪ 운송/저장상태 : □ 실온 □ 냉장 □ 냉동
▪ 가공장 정보 :

	등록번호	가공장 이름	가공장 주소
①			
②			
③			
④			

▪ 생산 또는 가공일자 :
▪ 유통기한 :
▪ 컨테이너 번호 :
▪ 열처리 방법 : 해당 온도에 체크(√)
<중심부 온도 기준>

1. 전란액 : 64℃ 2분 30초간(150초) □ / 이와 동등 이상 __℃ ____초(분) □
2. 난백액 : 55.6℃ 870초 □ / 56.7℃ 232초 □ / 이와 동등 이상 __℃ ____초(분) □
3. 난황액 : 62.2℃ 138초 □ / 이와 동등 이상 __℃ ____초(분) □
4. 전란분 : 60℃ 188초 □ / 이와 동등 이상 __℃ ____초(분) □
5. 난백분 : 67℃ 20시간 □ / 54.4℃ 513시간 □ / 이와 동등 이상 __℃ ____초(분) □
6. 난황분 : 63.5℃ 3.5분 □ / 이와 동등 이상 __℃ ____초(분) □
7. 알가열제품 : 90℃ 20분간 □ 또는 이와 동등 이상 ___℃ ____초(분) □

2. 위생증명

본인 (하단 서명 수의검사관)은 아래 사항을 증명한다.

1. 수출축산물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제조·가공·포장·운송·취급·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2. 수출축산물은 건강한 동물로부터 생산되며, 수출 정부 위생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물질(항생제·농약·호르몬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장출혈성대장균 등), 식품의 조사처리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을 포장한 용기 또는 포장지는 한국의 위생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멸균제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어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은 제품명, 제조사, 제조일(또는 유통기한)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직위 _____

검사필증인
(선택사항)

증명 담당자

정부검사관 성명 _____

서명일과 서명 _____

관할당국 또는 증명기관

3. 제품 상세 내역

연번	가공장			제품명	생산일 (가공일)	유통기한	포장수량	중량
	등록번호	가공장명	주소					
1								
2								
3								
4								
5								
6								
7								
8								
9								
10								

<품목 : 멸균식육가공품>

○○○(수출국 정부) 멸균식육가공품 수출 위생증명서

1. 제품증명

1-1. 증명서 일반사항

▪ 증명서 번호 :
▪ 수출자 (이름, 주소) :
▪ 수입자 (이름, 주소) :
선적지 (항구 또는 공항) 도착지 (항구 또는 공항) 선박 또는 항공편

1-2. 제품 정보

▪ 원산지 (생산국) :
▪ 제품명 : 축종 :
▪ 포장형태 :
▪ 수량 및 중량 :
▪ 가공장 정보 :

	등록번호	가공장명	주소
①			
②			
③			
④			

▪ 생산 또는 가공일자 :
▪ 유통기한 :
▪ 컨테이너 번호 :
▪ 멸균처리 방법 : 해당 온도에 체크(√)

□ 중심부 온도 120℃ 4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

□ 기타 : ___℃ ____초(분)

※ 쇠고기 유래 가공품은 습열조건(121℃ 15~20분, 115℃ 35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을 준수해야 함

2. 위생증명

본인 (하단 서명 수의검사관)은 아래 사항을 증명한다.

1. 수출축산물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제조·가공·포장·운송·취급·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2. 수출축산물은 건강한 동물로부터 생산되며, 수출 정부 위생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물질(항생제·농약·호르몬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장출혈성대장균 등), 식품의 조사처리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을 포장한 용기 또는 포장지는 한국의 위생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멸균제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어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은 제품명, 제조사, 제조일(또는 유통기한)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직위 _____

검사필증인
(선택사항)

증명 담당자

정부검사관 성명 _____

서명일과 서명 _____

관할당국 또는 증명기관

3. 제품 상세 내역

연번	가공장			제품명	생산일 (가공일)	유통기한	포장수량	중량
	등록번호	가공장명	주소					
1								
2								
3								
4								
5								
6								
7								
8								
9								
10								

3 해외제조업소 등록 확인 요청

○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운영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신청시 해외제조업소에서 작성한 등록신청서(동의서) 또는 공장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최근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등록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록취소 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장 확인을 위한 등록서류가 국가별로 발급기관, 형태, 내용 등이 상이하여 등록업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에 따라,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수 상위 20개 국가에 대해 우선 국가발행 제조업소 등록(허가·신고)증 양식과 기 제출된 국가별 공장등록증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합니다.

- 협조 요청 서한은 5월에 송부하였으며, 조속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협조요청 사항

- 해외제조업소 상위 20개국*에 국가발행 제조업소 허가(등록·신고)증 요청
  - 국가별 제조업소 허가(등록·신고)증 양식(명칭, 발급기관 등 포함)
    *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베트남, 스페인, 태국, 독일, 대만,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영국, 칠레, 캐나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터키
- 기 제출된 국가별 공장등록증 등의 서류 진위여부 사실확인 요청(10개국*)
  * 중국, 미국, 이탈리아, 베트남, 태국, 독일, 인도네시아, 캐나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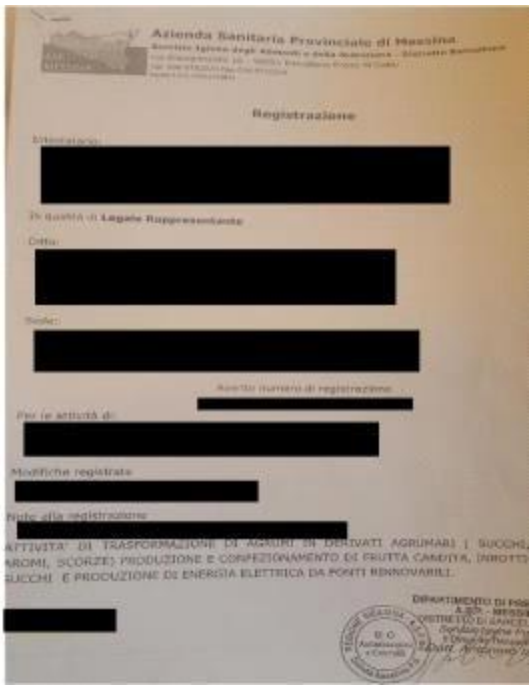
부서	담당자	이메일
현지실사과	문성심	seongsim@korea.kr
	전지혜	jh9099@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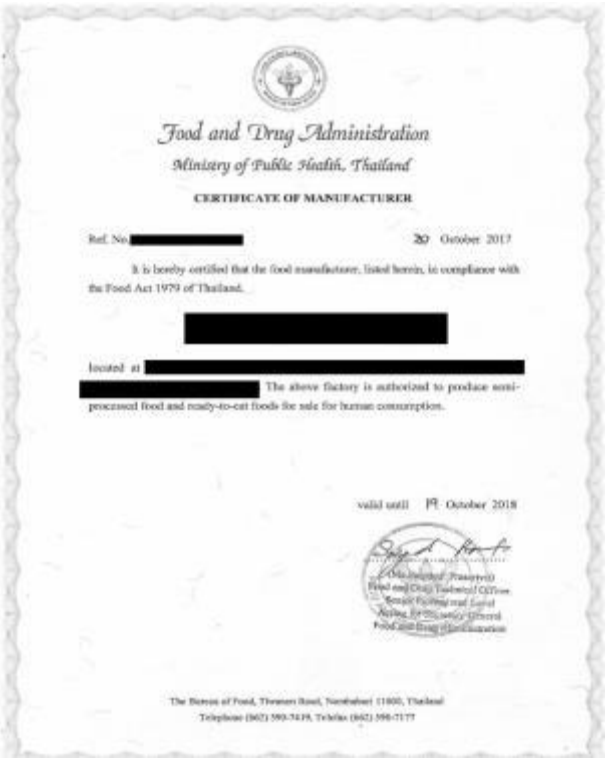
붙임 1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황('20.3.3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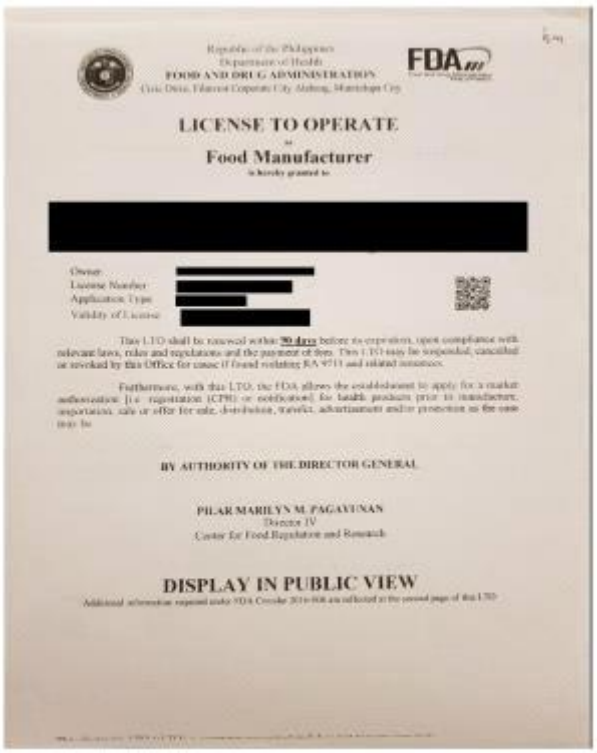
(단위 : 개소수)

연번	국가	등록	연번	국가	등록
	계	**41,575**			
1	중국	12,508	11	인도	674
2	일본	3,799	12	인도네시아	657
3	미국	3,447	13	호주	612
4	프랑스	3,348	14	러시아	564
5	이탈리아	2,502	15	영국	513
6	베트남	1,231	16	칠레	450
7	스페인	1,218	17	캐나다	440
8	태국	1,027	18	말레이시아	367
9	독일	995	19	필리핀	313
10	대만	979	20	터키	309
			21	기타	5,622

붙임 2 **공장 확인 진위여부 대상국가(예시)**

중국	미국
 대외무역경영자표안등록증	 식품시설등록증
이탈리아	**베트남**
 공장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태국	독일
	
식품허가증	식품제조공장등록증
인도네시아	**캐나다**
	
공장허가증	수출 허가증

필리핀	말레이시아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Health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LICENSE TO OPERATE Food Manufacturer [redacted] Owner License Number Application Type Validity of License This LTO shall be renewed within 30 days before its expiration, upon compliance with relevant laws, rules and regulations and the payment of fees. This LTO may be suspended, cancelled or revoked by this Office for cause if found violating RA 9711 and related issuances. Furthermore, with this LTO, the FDA allows the establishment to apply for a market authorization (i.e. registration (CPR) or notification) for health products prior to manufacture, importation, sale or offer for sale, distribution, transfer, advertisement and/or promotion in the case may be. BY AUTHORITY OF THE DIRECTOR GENERAL PILAR MARILYN M. PAGAYUNAN Director IV Center for Food Regulation and Research DISPLAY IN PUBLIC VIEW	 KEMENTERIAN KESIHATAN MALAYSIA MINISTRY OF HEALTH MALAYSIA SIJIL MeSTI MeSTI CERTIFICATE (Makanan Selamat Tanggungjawab Industri) [redacted] Telah memenuhi syarat-syarat bagi penaiktaan MeSTI Fulfil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certification of MeSTI MeSTI NORAINI BINTI DATO' MOHD OTHMAN Pengarah Kanan Kesihatan Dan Kualiti Makanan Senior Director for Food Safety and Quality Kementerian Kesihatan Malaysia Ministry of Health Malaysia Certification No Issue Date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증

4 수입통관 단계 검사개정 사항 및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안내

○ 수입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 항목 개정 및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입신고 구비서류 원본 스캔본 인정 임시조치>

- 코로나 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인해 항공·항만 등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입 위생증명서 원본 서류 도착 지연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 문제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원본 스캔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조치사항
식품 등	• 적용기간: '20.7.31일 까지 • 조치방법: 원본이 미제출 되더라도 아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가능(추후 원본 제출) - 제출대상 구비서류 원본을 컬러스캔(또는 사진촬영)한 파일 - 수입업소의 확인서(원본제출예정일자, 원본제출이 어려운 사유) (단,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우편 발송 지연만 해당)
축산물	• 적용기간 - EU 회원국 : '20.8.1일 까지(수출국 발급일 기준) - 호주 : '20.7.1일 까지(수출국 발급일 기준) • 조치방법: 사전 협의된 지정 이메일 주소로 사본 제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
수산물	• 적용기간 및 대상 - EU 회원국 : 수산부산물 위생증명서 '20.8.1일 까지(발급일 기준) - 호주 : 수산부산물 위생증명서 '20.7.1일 까지(발급일 기준) - 러시아 : 수산물 및 수산부산물 위생증명서 별도 통보일 까지 - 인도 : 검사성적서 '20.7.31.일까지(접수일 기준) • 조치방법: 수출위생증명서 및 검사성적서 원본 컬러스캔한 파일을 우선 접수·처리 하고 추후 원본 제출, 수출위생증명서는 사전 협의된 지정 이메일 주소로 제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한시적 조치 기간 연장 등 재검토

<수입단계 검사 개정 사항>

-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검사항목과 서류검사 대상 품목을 조정하였습니다.

①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조정 (58종→65종)

변경	대상농약	사유
추가 (10종)	1.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2. 카벤다짐(Carbendazim) 3.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4.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5.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6. 피리다벤(Pyridaben) 7.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8. 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butoxide) 9. 톨펜피라드(Tolfenpyrad) 10.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 부적합 발생 - 5년간 5회 이상 검출
제외 (3종)	1.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2.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3. 퀸토젠(Quintozene)	- 부적합 없음 - 5년간 5회 미만 검출

* 규정 :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020-25, '20.4.22.)

② 서류검사 대상 품목 조정(삭제 4품목, 추가 8품목)

변경	구분	대상 품목(국가)	사유
삭제 (4품목)	농임산물	1. 당근(중국) 2. 아보카도(미국) 3. 파(중국)	- 부적합 발생
	가공식품	1. 맥주(미국)	
추가 (8품목)	농임산물	1. 우엉(중국)	- 5년간 500건이상 검사한 결과 부적합 없음
	가공식품	1. 개량메주(중국) 2. 덱스트린(중국) 3. 맥주(아일랜드, 영국, 중국, 체코, 필리핀) 4. 물엿(중국) 5. 볶은커피(말레이시아, 스페인) 6. 연육(인도) 7. 위스키(미국)	

* 규정 :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020-25, '20.4.22.)

부서	담당자	이메일
수입검사관리과	박진아	jinapark@korea.kr
	정우준	jwj1223@korea.kr

5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SNS 발달 등으로 해외직구 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위해제품에 대한 구매주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참고)

-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하여 부정 유해물질 함유가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하고 인터넷 사이트(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해외직구 식품의 검사와 홍보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외국의 해외직구 관리현황과 제품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협조요청 합니다.

해외직구 식품관리 협조요청

- 국가별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정보
- 위해한 해외직구식품 정보 공유를 위해 국가별 소관 부처(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상기 협조요청건은 2020.7.31.(금)까지 아래 이메일로 회신 요망

부서	담당자	이메일
수입유통안전과	최은주	choie5@korea.kr
	이승진	ehehwlsl@korea.kr

붙임 1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하고, 부정물질 함유가 확인된 제품은 관세청에 통관차단 요청 및 식품안전나라에 공개

○ 해외직구 식품의 국내 수거검사 및 조치

- **(검사대상)** 아마존, 아이허브, 이베이 등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성기능 개선·근육강화 표방 제품
- **(검사항목)** 부정물질 78종(실데나필, 타다리필 등), 우피유래성분
- **(사후 조치)** 부정물질 등 위해우려성분 함유 제품은 관세청에 통관차단* 요청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 인터넷 공개(식품안전나라 사이트)

*「관세법」제237조제3호 :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 현황>

구분 / 건수(천건)	'15	'16	'17	'18	'19
해외직구(전체)	15,863	17,395	23,592	32,255	42,988
해외직구(식품)	4,761(30%)	5,782(33%)	7,795(33%)	9,967(31%)	13,748(32%)

* 출처: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관세청)

○ 해외직구 식품 구매주의 홍보

- **(메시지)** 해외직구식품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 요망
- **(방법)** 보도자료, 리플릿 제작·배포 및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SNS 홍보 실시